2014년도 제18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14년 9월 25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하성근 위원

정 해 방 위 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위 원(부총재)

- 4. 결석위원 없 음

강 준 오 부총재보 허 재 성 부총재보

이 흥 모 부총재보 채 선 병 외자운용원장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 신 운 조사국장

조 정 환 거시건전성분석국장 윤 면 식 통화정책국장

김 민 호 국제국장 전 승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박 성 준 공보실장 허 진 호 금융시장부장

문 한 근 의사관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33호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4년 9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96조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4년 9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금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작성과 위원간 의견조정 등이 주관위원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으며, 보고서의 서술대상 기간 및 체제, 작성시 주안점,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및 수정·보완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관련부서는 보고서의 서술대상 기간 및 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동 보고서의 서술 대상기간은 기본적으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로 하되 9월 미 연준의 FOMC 회의와 ECB의 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그리고 9월중 수정 발표된 일부 경제지표를 반영하였음.

보고서의 체제는 통화신용정책 결정을 뒷받침하는 당시의 경제·금융동향이 먼저 서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과 지난 3월 보고서 체제에 대한 외부의견 등을 반영해서 'I. 경제·금융동향, II. 통화신용정책 운영, III.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순으로 배치하였음.

이어 관련부서는 보고서 작성 시 주안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금리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8월에 인하한 배경에 대해 당시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의 변화와 전망 등과 연계해서 충실히 설명하고자 하였음.

여타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증액하고 공개시장조작 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과 그 주요 내용 등을 충실히 기술하고자 하였음.

이와 함께 『글로벌 저인플레이션의 배경』, 『은행 여수신 금리차 축소배경』, 『가계대출 동향의 특징 및 평가』 등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해서 분석하여 '참고'로 수록하였음.

다음으로 관련부서는 그동안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III.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의 경제전망에 대해 동 부분이지난 7월 수정 경제전망을 기초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이후의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상·하방 위험을 보다 균형있게 기술하고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도함께 언급하여 수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일부 위원은 보고서의 시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4월과 10월 경제 전망 발표 이후로 발간시기를 조정하는 방안과 향후 보고서 작성시에는 과거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방향도 보다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미래지향적으로 집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통위 토의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에 공표된 의사록 내용을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를 나타내었음.

또 일부 위원들은 일부 문구 수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는 이상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 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보고서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보고서가 최근 저물가의 원인을 잘 분석했음을 지적한 후, 지금은 과거와 달리 물가가 낮은 점이 문제이고 적정물가목표의 공론화 필요성도 있으므로 적정물가목표의 의미, 물가목표제도의 적절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다른 나라들은 물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통화신용 정책보고서는 작성하지 않는데 반해, 당행은 2가지를 모두 작성하고 있어 보고서 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을 언급한 후, 당행의 물가보고서를 법정보고서인 통화 신용정책보고서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4년 9월)(생략)